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허와 실

–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기대되나 건설업 현실과 괴리된 기준 시행은 시기상조 –

김영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dkim@cerik.re.kr

지난 10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8월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추진한 지 3개월여 만의 결과다.

이번에 발표된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대우해양조선의 대규모 부실 및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저하 등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막대한 규모의 건설 및 조선업계의

미청구 금액이 향후 관련 업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건설기업의 회계 처리 관행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 투자자들의 의혹이 커진 데도 이유가 있다. 즉, 건설 및 조선업종의 기업들에서 최근 나타난 ‘어닝쇼크’ 혹은 ‘빅배스’ 등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 절벽’ 현상이 금융시장을 당혹케 하였고, 건설 및 조선 기업들의 막대한 규모의 미청구 금액이 향후 건설기업 등의 대규모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회계상의 이유는 수주 산업, 특히 건설업종의

기업들은 진행기준의 적용시에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투입법은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실제적인 현재의 경영 실적을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총 예정원가를 추정할 때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원가의 상승을 즉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 당기 수익이 왜곡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 원가를 반영할 경우, 회계에 있어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목표를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잇단 건설 및 조선업 중 기업들의 회계 부실과 부정 의혹 규명,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당시에도 논쟁이 심했던 건설 공사의 진행기준에 대한 인식 문제 보완에 보다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기업 회계의 전 과정, 즉 회계 - 공시 - 감사 - 감독 등 재무회계의 기록과 공시, 감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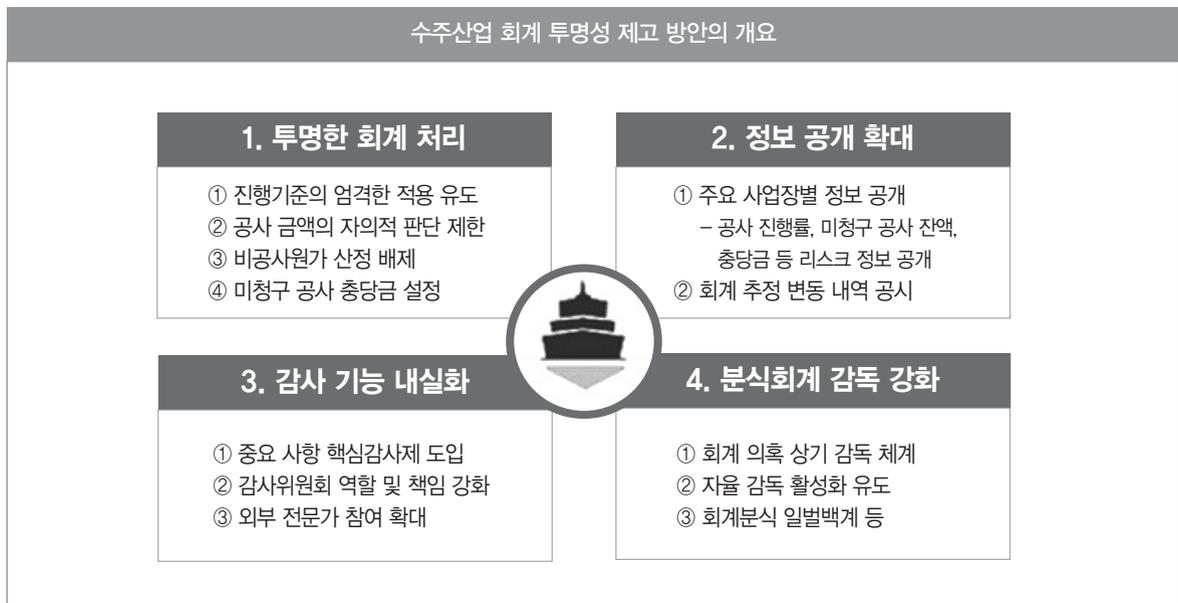
회계 부문에서는 진행기준 회계 처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적정성을 감사받게 된다. 또한, 매분기 단위로 총 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변경 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발주자가 공사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 있는 계약 및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 금액을 인식하게 했다. 잘못된 공사 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으로는 실제 공사 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공사 원가를 공사 진행률 산정시 배제하고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청구 공사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로 미청구 공사 금액의 분기별 회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회수 가능성 평가 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식 공시하게 했다.

공사 부문에서는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 진행률, 미청구 공사, 충당금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 진행기준 회계 처리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총 예정원가 변동 내역에 대한 부문별 공시는 총 예정원가를 분기 단위로 재평가하고 변



동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부문별로 공시해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를 제공했고, 주요 사업장별 공사 원가 변동 내역을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해 올바른 회계 처리 여부를 검증하게 했다.

감사 부문에서는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를 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했고, 감사인은 중요 회계 처리 사항에 대한 핵심 감사 실시 후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로는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 기업에 대해 감사 보고서상 외부 전문가 활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감독 부문에서는 회계 의혹 상시 감독 체계 구축과 자율 감독 활성화 유도, 회계 감독 역량 강화 및 회계 부정 제재 실효성 확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평가 및 문제점

이번 조치는 최근 일련의 ‘회계 절벽’ 현상에 대한 대책과 수주 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조치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수주 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건설기업 회계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선결 과제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회계 보고서상의 상세한 감사 서술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또한,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특성상 수주 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업계에서는 당초 테스크포스팀(TFT)에서 각 사업별 원가 정보의 공개가 논의되었다가 총 예정 원가 공개로 한정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건설기업들이 처한 최근의 경영 여건과 우리나라 기업 회계 전반의 시장 여건으로 볼 때, 다소 시기상조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 및 조선 산업에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제 회계기준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사

항을 우리나라만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추정 총계약원가의 공개 문제이다. 개별 공사에 대한 원가가 아니라도 추정 총계약원가의 공시는 수주 산업의 특성상 추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국내 건설공사도 추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해외 건설공사는 더욱 어려워져 실제로 해외 플랜트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원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수주 산업에 있어 원가의 공개는 수주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수주 활동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라 할 수 있는 공사 원가가 공개될 경우,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확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업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핵심감사제’ 도입도 우리나라 기업 회계의 외부 감사 기능의 여건상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기업 회계의 외부 감사 기능의 명확한 절차나 방

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돌 등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의 수익 인식 시점에 따른 문제로서 손실 추정을 하기가 어렵고, 자칫 과다 부채로 인하여 건설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킨다는 점도 자칫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판단의 예측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특별 감리 및 테마 감리의 강화에 있어서도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각 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어려운 시장 환경 하에 있는

건설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기업 활동의 규제로 작용해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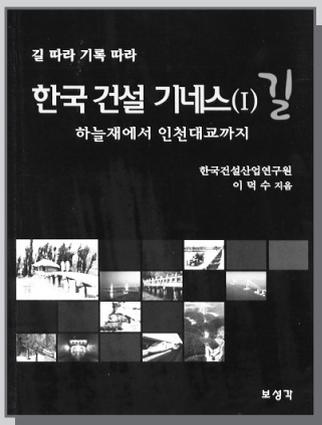
수주 산업, 특히 건설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질 필요성은 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어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외부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도 경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히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 시각에

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라 하겠다. 2011년 IFRS 도입에 따른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수익 인식 시점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급작스런 건설기업의 부채 비율 급증과 수익성 급감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련의 회계 의혹 및 부실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판단 재량에 따른 기업 활동의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CERIK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 한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포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 (I) 길」을 발간하였다.